

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

2026년 「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자치단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0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지방자치단체가 취약노동자*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 - *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, 특고·플랫폼 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등
- 지원기간 : 보조금 교부결정 시 ~ '26. 12.까지
- 지원대상 :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- 지원예산 : 국비 1,060백만원
 -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운영비의 70~90% 차등 보조
 - * 최소 지방비 부담률 이상 지방비 투입 시 지원 우대 및 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

<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별 국비 보조율 >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광역	50% 미만	90%
	50% 이상 70% 미만	80%
	70% 이상	70%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기초	60% 미만	90%
	60% 이상 70% 미만	80%
	70% 이상	70%

2. 신청 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'25. 12. 30.(화) ~ '26. 1. 23.(금) 18:00까지

* 신청기간 도과 후 신청 시 심사에서 제외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사업개요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운영 예산서 1부, 사업별 기관 현황 1부 등 (첨부1. 사업신청서 참조)

* 첨부2.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작성

○ 신청방법 : 온나라 공문(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☎044-202-7635) 제출

* 결재 지연 등 온나라 공문 발송이 기한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유선연락 후 온나라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(단, '26.1.26.(월)까지 공문 미송부시 심사에서 제외)

3. 선정 심사 및 결과 안내

□ 지원사업

○ (교육)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, 예비근로자(대학생, 고등학생 가능)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되

- 영세사업장 사업주 등 작은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지원

<지원 대상 교육사업 예시>

대상	주요 내용	효과
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	▶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기본권 침해사례와 권리구제 절차 ▶ 포괄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오남용 사례 ▶ 퇴직급여제도 안내 ▶ 고용보험, 산재보험 사업 안내	노동권 침해에 대한 자구력 향상을 통한 권익 보호
예비 근로자 (학생 등)	▶ 노동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▶ 근로계약 체결(이론 + 실습교육) ▶ 불공정채용 사례와 대응방법 ▶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▶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제도	노동권리의식 함양, 기초노동법 이해도 제고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
지역별 특화산업 근로자	▶ 업종별 근로계약·임금체계 등 노무관리 교육 ▶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▶ 특별고용지원업종,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▶ 노무제공자의 노동관계법 적용	노동법 준수 의식 제고, 지역·업종별 노무관리 역량 강화

대상	주요 내용	효과
특고,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	▶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 안내 ▶ 산업안전보건교육 ▶ 표준계약서 내용 및 작성(이론 + 실습교육) ▶ 불공정 거래 및 계약해지 사례	노동권리 의식 함양 노동권 침해에 대한 자구력 향상을 통한 권익 보호
작은사업장	▶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▶ 공정한 근로계약 내용 및 체결 ▶ 포괄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오남용 사례 ▶ 퇴직급여제도 안내	영세사업주의 노동법 준수를 통해 취약노동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증진

- (법률구조상담)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, 상담센터, 권익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용노동 관련 권리침해 및 불이익 구제 지원 →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와 연계
- 여러 내용이 병합된 경우,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 운영 지원

<지원 대상 법률구조상담 예시>

구분	주요 법률구조 지원내용
신고사건	▶ 임금체불, 직장내 괴롭힘 등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·작성 지원 ▶ 신고사건 분야별 지방관서 및 부서 소관 안내 ▶ 사건 관련 문서(진정서 등) 작성 지원 ▶ 대지급금 신청 지원 등
심판 및 소송	▶ 부당해고, 부당노동행위 요건 및 판단기준 법률자문 ▶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의견서 작성 지원 ▶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권리구제 이행 지원 ▶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따른 행정소송 지원 등
노무제공자 대상 상담	▶ 불공정 거래 및 계약해지 관련 권리보호 법률자문 ▶ 근로자성 판단 및 신고사건 지원 등 ▶ 산재보상 신청 작성 지원 등

□ 우선지원 대상

- (지역 인프라 활용)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, 인적·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노동권익센터, 노동복지센터, 노동자종합지원센터, 노동법률상담소 등을 활용 시 선정 우대
- (취약노동자 대변단체 참여) 특고, 플랫폼종사자 등을 대변하는 단체와 컨소시엄(간접보조사업자)으로 사업 참여 시 선정 우대

□ 선정 심사

-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 및 사업과 지원액 결정
 - 심사내용 : 사업목적 적합성, 사업계획 충실성, 사업결과 효과성, 예산산정 적정성 등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의
 - 필요시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
 -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, 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
- 선정결과 안내
 - '26. 2월 중 선정된 지자체에 개별 통보

4. 보조금 지원 및 교부 방식

□ 보조금 지원 및 교부

- (지원)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운영비의 70~90% 지원
 - 광역·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,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른 부담비율 적용*
- *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자체별 부담금액은 컨소시엄에서 자율 결정하되, 부담금액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

<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별 국비 보조율 >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광역	50% 미만	90%
	50% 이상 70% 미만	80%
	70% 이상	70%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기초	60% 미만	90%
	60% 이상 70% 미만	80%
	70% 이상	70%

- (교부)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2차례 나누어 교부하되, 조기 집행을 위해 1차에 70% 교부, 2차에 30% 교부
 - 1차 교부 이후 보조금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(8월 예정)
 - 공모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(민간단체 등) 등에 공익을 해하는 중대한 사유*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* 공모내용 및 교부조건 미준수, 보조금 목적 외 사용,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,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(법령 위반, 폭력행위 등)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
 - ↳ (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, 사회적 물의 행위) 법령 위반, 폭력 행위,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, 부당노동행위,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,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·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등
- 사업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
 -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「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」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,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
-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☎044-202-7635, 7637) 연락